

2019. 9. 16 일 '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이하 "전자증권법")'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 조 3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 (2019.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 주주 조치 사항

- 2019.8.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- 2019.8.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8.22~9.11 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 바랍니다.

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8.21 일) 및 방문 시 필요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유첨자료

2 페이지를

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 년 6 월 11 일

주식회사 싸이토젠

대표이사 전 병 희 (직인생략)